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3648 |
|----------|------|

발의연월일 : 2024. 9. 4.

발의자 : 윤준병 · 이병진 · 김윤덕
허종식 · 한병도 · 정동영
문대림 · 유동수 · 강선우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 · 공갈 및 횡령 · 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제328조 등).

그러나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이러한 특례규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에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있는 「형법」 제328조제1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음(2024. 6. 27. 2020헌마 468등 결정).

이에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범죄에 따른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는 등

친족 간 유대관계를 크게 해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
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 ①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제323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4조(친족 간의 범행) ① 친족 간에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또는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4조 중 “第328條”를 “제344조”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취득한 재물”은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으로 본다.

제361조 중 “第328條”를 “제344조”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취득한 재물”은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으로 본다.

제365조제1항 중 “第328條第1項, 第2項”을 “제3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第328條第1項”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
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第328條(親族間의 犯行과 告訴)</p> <p>①直系血族, 配偶者,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 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한다.</p> <p>②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第32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p> <p>③前2項의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前2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p> <p>第344條(親族間의 犯行) 第328條의 規定은 第329條 乃至 第332條의 罪 또는 未遂犯에 準用한다.</p> | <p>제328조(친족 간의 범행) ①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제323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44조(친족 간의 범행) ① 친족 간에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또는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의 신분관계가 없는</p> |
| | |

| | |
|---|---|
| <p>第354條(親族間의 犯行, 動力) 第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章의 罪에 準用한다. <후단 신설></p> | <p>공범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
| <p>第361條(親族間의 犯行, 動力) 第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章의 罪에 準用한다. <후단 신설></p> | <p>第354條(親族間의 犯行, 動力) 제344조----- -----. 이 경우 “취득한 재물”은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본다.</p> |
| <p>第365條(親族間의 犯行) ①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被害者間に 第328條第1項, 第2項의 身分關係가 있는 때에는 同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②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本犯間に 第328條第1項의 身分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但,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例外로 한다.</p> | <p>第361條(親族間의 犯行, 動力) 제344조----- -----. 이 경우 “취득한 재물”은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본다.</p> <p>第365條(親族間의 犯行) ① ----- ----- 제344조 제1항----- ----- -----. ②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 -----. -----.</p> |